

地方稅法令
質疑回信

- 行政自治部 稅政課 -

1.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질 의】

형님의 사망으로 생전에 작성된 유증 서류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 하고 지방세법 제120조1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6개월 이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세 관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 하였음.

형님의 사망후 49재를 끝마치고 상속 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가족이 모여 상의하여 사망 후 약 5개월 정도 경과한 후 상속등기(유증포함)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려고 하였더니 납기후라 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서를 고지하였음.

위와 같이 유증의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또한 신고납부기한 도 상속과 마찬가지로 취득일로부터 6월 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회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및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대하여는 상속에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 부터 6월이 되는 것이나, 상속인이 아닌 자의 유증에 대하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귀문의 경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에 해당여부는 과세권 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임.

(세정 13407-878, 2000. 7. 8)

2. 토지·건물 및 보유차량의 지방세부와 타당성 여부

- 의료보험연합회는 구 의료보험법 제27조에 의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 공법인으로서 법률 제5854호로 '99.2.8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으로 의료보험연합회는 해산되고(법 부칙 제6조), 해산과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고 함)으로 설립되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진료비)를 심사하는 전문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의 진료비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법상 규정되어 있음(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 이에 종전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을 심사평가원으로 승계받음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의 다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 의】

- 구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되고 해산과 동시에 심사평가원으로 설립되어 종전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을 승계받음에 있어 토지·건물 및 보유차량에 대한 등록명의를 변경이 수반되는 바, - 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에 따라 포괄승계된 토지·건물 및 업무용 차량이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원의 토지·건물 및 업무용 차량은 구의료보험법상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으로서 소유권자체의 이전(변경)사항이 되지 않으므로 지방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 또한 심사평가원의 토지·건물 및 업무용차량에 대한 지방세 과세가 적법한 것이라면 행정자치부 세정13430-122('99.1.27)호와 관련된 유사 사례의 회신내용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

- 구 의료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해산되고 동 의료보험연합회의 진료비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보는 의제규정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설립행위성격은 법의 규정에 의한, 즉 일종의 특별법에 의한 단순한 조직변경의 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음.
-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만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합병과 유사한 법인전환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과세대상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 법인합병의 경우 비과세하는 취지를 유추해석하여 볼 때 심사평가원이 해산된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기존의 재산을 승계받는 것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명의변경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대한 득실사항이 없는 심사평가원의 토지·건물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적법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회신

구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가 별도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승계하는 부동산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그에 따른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함. (세정 13407-912, 2000. 7. 14)

3. 취득세 과세표준

【질 의】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신고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서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부동산의 취득세의 신고제도와 검인계약서제도는 그 목적도 다르고 근거 법률도 다른 별개의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검인계약서의 절차 및 내용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지방세법 소정의 양식에 의거 취득세를 자진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귀부의 공식견해를 회신 바랍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동조 동항 각호에 기재된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됨.

(세정 13407-908, 2000. 7. 14)

4. 취득세 감면 및 종과세 여부

【질 의】

- 당사는 1997년 6월 25일 설립되어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7년 8월 7일 사업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조감법 제113조 제2항 및 제1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즉시 공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1998년 5월 4일 부도처리되어 당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거은행인 ○○은행에서 당사의 채권을 1998년 11월 6일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업회생부가 신설되어 가동중인 공장은 ABS(자산담보부채권)매각 및 AMC(자산관리회사) 인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제정하여 1999년 8월 10일 당사는 기업회생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1999년 4월 21일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 일체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계약한 후에도 계속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다 2년경과 후인 2000년 3월 14일 당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및 12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기 감면 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정되지 아니하고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되지 않는지
- 또한, 1997년 12월 10일 증축 준공하여 취득한 건물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해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포괄적인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기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추정되지 않는지
 -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자금사정으로 당해 기업이 부도처리되어 주거은행인 채권은행에서 임의 경매로 인하여 타인에게 매각되었다면 2년 이상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감면 받은 세액을 추정하지 않음(행자부 세정 13407-294, 1999. 3. 10)
- 1997년 8월 7일 취득한 토지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산 및 부채와 종업원 등을 포함한 일체의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은행부채 ₩1,274,575,796 (토지가액 ₩727,612,760)을 양수인인 성림에너지에서 인수하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였으므로 매도법인인 당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및 산업단지내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여 공장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IMF 영향 등으로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주거채 채권은행에서 귀사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업회생지원업무규정에 의거 그 가동중인 공장용 부동산을 자산, 부채, 종업원 등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타사에 양도시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단서규정과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기히 경감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정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세정 13407-875, 2000. 7. 8)

5. 매매계약 해제시 취득세 납세 의무

【질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즉 명의원상복귀) 이행을 조건으로 취득세 납부 의무의 소멸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었습니다.

사실상 질의당시에는 판결문의 주문과 같이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의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결과로 ○○구청은 판결문 주문대로(매매계약취소 및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의 이행조건으로 취득세 납부말소 및 그에 따른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를 이행하여 주겠다는 답변에 즉시 이행했으나 막상 담당관들은 부과 취소를 처리해주고 싶고 또한 해줘야 하겠는데 단지 원인무효에 관한 적용의 적부 여부 및 동일 성격의 사건에 대한 처리 경험이 없고 사후의 책임소재 및 감사문제 등등의 문제까지를 고려하여 자체 판단 처리 불가로 답변하며 오랜 기간 지연되어 오다, 반복되는 저의 처리독촉에 대해 오히려 민원인인 저에게 인터넷 사이트상으로 질의를 하여 확실한 처리 근거를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확보해 오면 그때 가서 납부 취소처리를 해주겠다는 반 떠넘기기식의 주문을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아직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여 우선 인근의 몇몇 시·구청의 세무 담당 실무자들을 방문하여 질문을 해보았습니다만 재판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 그 판결문의 주문이행을 조건으로 취득세 납부를 부과취소해 주고 있고 사실상 처리를 못해 줄 근거는 불명료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드리웁건대 해당구청의 담당관들이 처리하여 주고 싶으나 위와 같은 문제로 소신있는 처리를 회피하고 있는 입장이며, 반대로 본 질의자는 하루가 급한 사정으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의 명료한 근거의 제시를 앙망하고 있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

귀문의 경우 당초에 적법하게 매매계약이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상태에서 채권·채무 당사자의 다툼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기회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세정 13407-879, 2000. 7. 8)

6. 자기 부동산을 경락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 의】

본인은 10여년전 부동산을 구입한 후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기내 납부하고 적법하게 등기 경료하였습니다.

그후 몇 년이 지난 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그 제3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본인소유의 부동산과 제3자의 부동산이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본인이 당초 본인 소유였던 부동산과 제3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 낙찰을 보게 되어 등기를 하게 될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한계(예, 당초 본인소유였던 부동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제3자의 부동산 취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득부분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 의무에 해당되는지?)와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교육세, 농특세 등)의 납세의무여부와 관련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

중전 등기이전 경료된 사안인 본인 소유였던 부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의 재납부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회신

귀문과 같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에 부처짐과 동시에 중전의 소유권·저당권 등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되고 법원 등 경매주체로부터 불특정다수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됨.

(세정 13407-901, 2000. 7. 12)

7.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4항(등록세 면제) 및 제120조4항(취득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면 同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8년중에 설립되어 토지, 건물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이 2000년중에 신규로 설립된 주식회사(영농조합법인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됨)에 토지, 건물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려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여 관련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4항 및 제120조 4항에 의하여 면제받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을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과 동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아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세정 13407-948, 2000. 7. 27)

8.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취득세 면제 여부

【질 의】

1. 산업발전법 제15조(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동법 제14조 ①항 및 ④항에 의거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인수 또는 출자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적용 여부 및 적용방법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⑤항6호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같은 취지로 설립된 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취득세면제 조항이 없는 것 같은데 구조조정조합이 과점주주가 될 때에는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요?

2.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규약에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기에, 소득세법 기본통칙 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자세) ③항에 근거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음.

만일 공동사업자로 본다면 조합을 하나의 주체로 보고 개별 조합원(개인, 법인, 구조조정전문회사)별로 각각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면, 개별 조합원별로 먼저 특수관계 여부를 따진 후 이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판단(이 경우 조합의 지분이 51%이상 되어도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음)하여야 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제6호에서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 회사에게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취득세 세액 안분은 해당 기업구조조정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임. (세정 13407-949, 2000. 7.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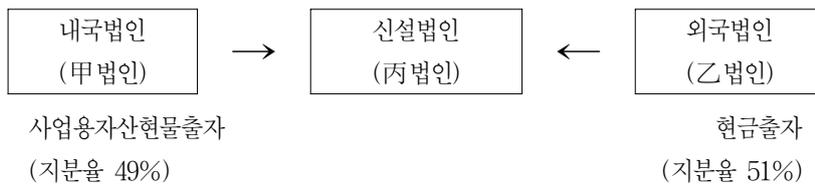
9.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여부

본인은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계책임자로 본인이 근무하는 “甲” 법인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이하 “乙”법인이라 한다)은 현금출자하여 신설법인(이하 “丙”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신설법인 설립현황】

가. 설립일자: 1999. 4. 20

나. 출자현황:



다. 기타사항

- 1) “甲” 법인과 “을” 법인은 “丙” 법인의 출자자 관계만 있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甲” 법인의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

【질의배경】

가. 내국법인(甲법인)과 외국법인(乙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2항 규정에 대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동법 제119조 제1항7호 및 제120조 제1항6호에 의하여 취·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신설법인(丙법인)은 1999.5.20 과세관청의 취·등록세 감면확인을 받아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음.

나. 그러나, 과세관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입법취지나 구조조정에 의한 신설법인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취지는 이해되나 “갑” 법인과 “을” 법인은 신설법인 설립일인 1999.4.20에 丙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항 내용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간에 법인설립 직전까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면제한다”라고 명확하게 구체적인 문구(직전까지)가 있지 아니한 이상 신설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의 주주가 되어 특수관계가 성립되므로 과세권자는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해도 된다는 주장임.

【질의내용】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7호 및 120조제1항6호 규정의 취·등록세 감면 요건인 동법 제38조의 2항 규정의 특수관계 성립시기는 공동출자한 甲법인과 乙법인이 신설법인 법인설립전(1999.4.20)까지 특수관계가 없다면 현물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120조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유권해석은?

<질의 2> 신설법인인 丙법인이 설립이전까지 “甲”법인과 “乙”법인의 관계는 “丙”법인에 공동출자한 사실 이외에는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甲”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조세특례법상 현물출자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규정에 의거 취·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회신

귀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와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추후 신설법인의 설립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세정 13407-942, 2000. 7. 27)

10. 부가가치세 중 면세주택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

【질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건축업, 건축, 토목 등 도급공사 및 자체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물을 분양하는 직영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세 담당자로서 아래와 같이 당사 업무를 진행해오면서 해석상 어려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또는 제외 여부의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및 동 법 기본통칙 111-1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부가가치세 중 면세주택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건축비 원시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A 건설현장에 면세주택이 70%, 일반주택(85㎡ 초과)이 30%의 비율로 하는 공사현장의 재료비 등 물품의 공급가액 100억원에 100억원은 당연히 건축비 취득비용이지만,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10억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관련조항(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30%의 3억은 선급부가가치세로 처리하였다가 환급을 받지만,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70%의 7억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지 못하고, 원가계정(잡비) 또는 관관비 및 영업외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 지방세법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에 “간접비용을 포함하되-”라고 하였지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법인의 계정처리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 매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 전액이 건축비 취득비용에서 제외대상 비용인지
- 아니면 실체는 과세표준에 제외될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계정으로 처리하여 (또는 환급을 받지 않으므로 선급부가가치세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인 장부에 있는 30%(위의 A현장 예시 참조) 부분에 대해서만 건축비 취득비용 제외대상인지
- 그렇다면 법인장부에 A현장의 원가계정이 아닌 본사의 영업의 비용 “잡비”계정으로 처리하였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전액 건축비 취득비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 아울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의 지방세법상의 부가가치세는 국세의 부가가치세와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준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본 질의자의 의견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결정할 때 매출세액합계-매입세액=납부세액(-시 환급세액)을 산정할 경우에 면세부분에 해당하여 단지 환급만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지 부가가치세법 원래의 부가가치세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므로, 위의 취득세 건축비용 또는 기타비용의 취득비용과 관련하여 계정처리 여하에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법인장부상 원가계정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조문과 같이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질의 2> 입주자가 납부하기로 한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건축비 원시취득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질의 3> 임시용 건축물인 “아파트분양용 건본주택비” 비용의 건본주택 취득비용 범위에 포함 또는 제외 여부와 본 건물 취득비용으로 포함 또는 제외여부.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95. 8. 2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규정에 의하여 '95. 8.21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액등 모든 부가가치세액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됨.

<질의 2, 3>

아파트건축물의 부속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는 토지보유에 관한 세금이므로 그 건축물의 신축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임시용건축물의 완공 이후 건축비용이 아닌 비품구입비, 장식물재배치비용 등은 그 임시용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세정 13407-936, 2000. 7. 24)

11.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비과세 여부

【질의사항】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이전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원생들의 입주를 하지 못하고 이를 의료기관(유료 노인성치매환자 진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

1. 위 질의사항과 같은 경우에 당초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2호의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의 의료업이 반드시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료복지시설이어야 하는지?
2. 의료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의료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귀 사회복지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됨. (세정 13407-965, 2000. 8. 1)

12.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농지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질의】

저희 회사는 99년 6월 20일에 설립된 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 자체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준 농림지역인 전답을 매입하였던바,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는 이미 감면을 받았으며, 준 농림지인 전답이 공장을 설립하여 준공 검사를 받으면 지목이 공장용지로 바뀐다고 하는데, 지목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저희 회사는 벤처 기업으로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에 대해 감면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농지를 당해 목적에 따라 공장용지로 지목변경(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2년이내인 경우에 한함)한 경우라면 동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취득세 감면대상임. (세정 13407-966, 2000. 8. 1)

1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취득세 면제 여부

【질의요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술 및 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당원이 수도권내에 사무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의 업무 내용】

- 1) 당원은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91.12.31 법률 제4482호) 제15조의2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또한 비영리 법인임.
- 2) 당원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승강기의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고(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7-152호), 건설교통부로부터 기계식주차장치의 검사대행기관으로(건설교통부, 공평91117-486, '96.7.1) 지정되었으며, 노동부로부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승(서울지방노동청, 고안이68500-977, '99.3.12) 받았으며, '95년부터 승강기분야 국제표준화 업무추진간사기관으로 지정(공업진흥청 '95.6.24)되었고 '97부터는 승강기부품표준화 개발기관으로 지정받아 현재까지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음. 또한 당원은 진단, 감정, 감리 등의 기술용역과 표준보수로 산정, 사고유형조사분석 및 안전성 평가등의 학술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음.
- 3) 당원의 기술용역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는 엔지니어링활동으로 규정하였고(과학기술부, 엔진 71330-228, '98.10.1) 재정경제부도 엔지니어링기술용역으로서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한 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276, '99.7.28)가 있음.

【당원의 견해】

- 1) 지방세법 제290조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진흥단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원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주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 요업무가 학술 및 기술용역제공사업이므로 동법에서 규정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며,
- 2) 지방세법시행령은 학술용역 또는 기술용역단체가 영위하는 기술용역제공사업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비록 당원의 기술용역사업이 수익사업이라 할지라도 공공법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 3) 당원이 수도권에서 본사용 건물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등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회 신

지방세법 제290조제1항제18호 규정의 “학술연구단체 기술진흥단체”라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 및 과학기술의 진흥·개발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임. 따라서 주된 업무가 기술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연구·기술진흥업무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해석이 아닌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의 정관·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사업 추진실적 등을 조사한 후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귀문의 경우 귀법인의 주된 업무가 승강기 검사나 기계식 주차장치 검사용역 제공사업인 경우에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진흥단체로 볼 수 없어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님.

(세정 13407-964, 2000. 8. 1)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道稅의 拂入(도세의 불입)

市長·郡守가 도세를 징수한 때에는 道金庫,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 소재지에 있는 市·郡은 수납한 날의 翌日까지 그 이외의 市·郡은 수납한 날로부터 5일안에 納付書를 첨부하여 道金庫에 불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道金庫에 불입하여야 한다(地方稅§42①).

- 편집실 -